#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2014가합513297]



# 【전문】

- 【원 고】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상순)
- 【피 고】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 【변론종결】2015. 6. 25.

# 【주문】

1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790,549,050원 및 그 중 399,747,650원에 대하여는 2012.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90,801,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 원고는 2010. 12. 30.경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보'라 한다)와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피보험자를 원고 및 원고 임원들로, 보험사고를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를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any claim or claims first made)로, 보험기간을 약 1년(2010. 12. 30.부터 2011. 12. 31.까지)으로, 보험금 한도액을 500억 원으로, 보험료를 180,64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원배상 책임보험계약(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and Company Reimbursement, 이하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검찰의 공소제기 및 원고의 변호사보수 지출
- 1) 검찰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소외 1(2009. 6.경부터 2012. 6.경까지 재직)과 원고 직원 소외 2 부장이 스캘퍼들과 공모하여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 일반투자자들은 모르는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 등 부정한 수단을 스캘퍼들에게 제공하고, 스캘퍼들이 이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합계 4,797억 원 상당의 주식워런트증권매매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수수료 수익을 취득한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외 1과 소외 2 등을 피고인으로 하여 2011. 6. 23. 공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공소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고합604호로 2011. 12. 30.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찰이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노191) 및 상고(2013도8700)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원고는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2011. 6.경부터 원고의 이름으로 ○○○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등과 직접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보수로 합계 840,549,050원(이하'이 사건 변호사보수'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 1. 담보조항 담보 B: 회사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 피보험회사의 임원들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단,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거 보상한 경우에 한합니다(The Insurer shall reimburse the Company for Loss arising from any claim or claim which are first made against the Directors or Officers during the Policy Period for any alleged Wrongful Act in their respective capacities as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mpany, but only when and to the extent that the Company has indemnified the Directors of Officers for such Loss pursuant to law, common of statutory, or contract, or the Charter or By-law of the Company duly effective under such law which determines and defines such right of indemnity).2. 용어의 정의 (b) 방어비용이란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의 조사, 조정, 방어 및 상소에 필요한 적절한 보수, 비용, 기타 비용(항 소보증, 압류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보험료를 포함하지만 당사가 그러한 보증을 신청하고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으로서 당사가 사전에 동의한 것을 말합니다("Defense Costs" means reasonable and necessary fees, costs and expenses consented to by the Insurer(including premiums for any appeal bond, attachment bond or similar bond, but without any obligation to apply for or furnish any such bond) resulting from the investigation, adjustment, defense and appeal of any claim against the Insureds, but excluding salaries of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Company}. (d) 손해란 손해배상금, 판결금액, 화해금액 및 방어비용을 말합니다("Loss" means damages, judgment, settlements and Defense Costs).4. 면책조항 당사는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제기된 다음의 경우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습니다.
- (b) 사기적 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8. 통지/사고보고 당사에 대한 통지는 당사의 주소에 서면으로 하야 합니다.

우편으로 할 경우, 통지를 우송한 날짜가 통지일이 되며, 우송의 증거가 통지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9. 방어비용, 화해, 판결(방어비용 선지불 포함) 당사는, 담보B에서 손해보상 처리에 앞서 방어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보상 처리에 앞서 방어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외 이해당사자들은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선지출된 방어비용이 이 보험에서 담보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당사는 본 보험 보험계약 하에서 방어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는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 부담하거나, 화해하거나, 판결에 동의하거나 방어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당사가 동의한 화해금액, 판결액 및 방어비용만이 손해로 보장됩니다.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 (절대면책) 부과된 보험료를 전제로 이 증권의 4. 면책사항에 대하여 다음 내용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회사는 1933년 증권거래소법, 1934년 증권거래소법,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이나 규정, 유가증권을 규율하는 유사한 연방, 주, 지역조례, 또는 그 개정된 관련법규를 실제로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것에 기인하거나 그와 여하한 방법으로 관련되거나 기초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그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Section 4. EXCLUSIONS shall be amended by adding the following. where all of part of such Claim,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is for/is based upon/is in any manner related to/ arises form or results from ant actual or alleged violation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of the Securities Act of 1934, any rules or ragulation adoption thereunder, an similar federal, state or provincial statute regulating securities of as they may be amended, any rules of regulation adoption thereunder, or any other federal, state provincial or common relating securities. Schedule for D & O 13) Exclusion Clause (면책사항)-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특별약관 위 면책조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대체된다.

This Exclusion is absolutely substituted as a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라. 원고는 2012. 4. 23. 그린손보에 이 사건 변호사 보수 중 수사 및 1심 단계에서 지급한 변호사 보수 합계 449,747,6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청구하였으나, 그린손보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 마. 한편, 그린손보는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금융위원회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린손보가 더 이상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린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피고(2013. 5. 3.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에게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갖게 되었다.

# [이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 원고는 2010. 12. 30.경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보'라 한다)와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피보험자를 원고 및 원고 임원들로, 보험사고를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를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any claim or claims first made)로, 보험기간을 약 1년(2010. 12. 30.부터 2011. 12. 31.까지)으로, 보험금 한도액을 500억 원으로, 보험료를 180,64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원배상 책임보험계약(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and Company Reimbursement, 이하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검찰의 공소제기 및 원고의 변호사보수 지출
- 1) 검찰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소외 1(2009. 6.경부터 2012. 6.경까지 재직)과 원고 직원 소외 2 부장이 스캘퍼들과 공모하여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 일반투자자들은 모르는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 등 부정한 수단을 스캘퍼들에게 제공하고, 스캘퍼들이 이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합계 4,797억 원 상당의 주식워런트증권매매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수수료 수익을 취득한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외 1과 소외 2 등을 피고인으로 하여 2011. 6. 23. 공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공소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고합604호로 2011. 12. 30.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찰이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노191) 및 상고(2013도8700)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3) 원고는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2011. 6.경부터 원고의 이름으로 ○○○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등과 직접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보수로 합계 840,549,050원(이하 '이 사건 변호사보수'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 1. 담보조항 담보 B: 회사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 피보험회사의 임원들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단,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거 보상한 경우에 한합니다(The Insurer shall reimburse the Company for Loss arising from any claim or claim which are first made against the Directors or Officers during the Policy Period for any alleged Wrongful Act in their respective capacities as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mpany, but only when and to the extent that the Company has indemnified the Directors of Officers for such Loss pursuant to law, common of statutory, or contract, or the Charter or By-law of the Company duly effective under such law which determines and defines such right of indemnity).2. 용어의 정의 (b) 방어비용이란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의 조사, 조정, 방어 및 상소에 필요한 적절한 보수, 비용, 기타 비용(항 소보증, 압류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보험료를 포함하지만 당사가 그러한 보증을 신청하고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으로서 당사가 사전에 동의한 것을 말합니다("Defense Costs" means reasonable and necessary fees, costs and expenses consented to by the Insurer(including premiums for any appeal bond, attachment bond or similar bond, but without any obligation to apply for or furnish any such bond) resulting from the investigation, adjustment, defense and appeal of any claim against the Insureds, but excluding salaries of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Company). (d) 손해란 손해배상금, 판결금액, 화해금액 및 방어비용을 말합니다("Loss" means damages, judgment, settlements and Defense Costs).4. 면책조항 당사는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제기된 다음의 경우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습니다.
- (b) 사기적 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8. 통지/사고보고 당사에 대한 통지는 당사의 주소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할 경우, 통지를 우송한 날짜가 통지일이 되며, 우송의 증거가 통지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9. 방어비용, 화해, 판결(방어비용 선지불 포함) 당사는, 담보B에서 손해보상 처리에 앞서 방어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보상 처리에 앞서 방어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외 이해당사자들은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선지출된 방어비용이 이 보험에서 담보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당사는 본 보험 보험계약 하에서 방어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는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 부담하거나, 화해하거나, 판결에 동의하거나 방어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당사가 동의한 화해금액, 판결액 및 방어비용만이 손해로 보장됩니다.
-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 (절대면책) 부과된 보험료를 전제로 이 증권의 4. 면책사항에 대하여 다음 내용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보험회사는 1933년 증권거래소법, 1934년 증권거래소법,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이나 규정, 유가증권을 규율하는 유사한 연방, 주, 지역조례, 또는 그 개정된 관련법규를 실제로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것에 기인하거나 그와 여하한 방법으로 관련되거나 기초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그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Section 4. EXCLUSIONS shall be amended by adding the following. where all of part of such Claim,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is for/is based upon/is in any manner related to/ arises form or results from ant actual or alleged violation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of the Securities Act of 1934, any rules or ragulation adoption thereunder, an similar federal, state or provincial statute regulating securities of as they may be amended, any rules of regulation adoption thereunder, or any other federal, state provincial or common relating securities. Schedule for D & O 13) Exclusion Clause (면책사항)-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특별약관 위 면책조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대체된다.

This Exclusion is absolutely substituted as a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라. 원고는 2012. 4. 23. 그린손보에 이 사건 변호사 보수 중 수사 및 1심 단계에서 지급한 변호사 보수 합계 449,747,6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청구하였으나, 그린손보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 마. 한편, 그린손보는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금융위원회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린손보가 더 이상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린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피고(2013. 5. 3.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에게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갖게 되었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